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증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02. 8. 28.

제출자: 조명호의원외2인

입법취지(제안이유)

- . 현행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는 1996년 3월 1일 제정 공포되고, 1999년 1월 11일 1차 개정 시행 중에 있으나, 현행법 제6조에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만 기술하고 있어, 행정정보 공개에 소극적 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 . 안 제6조에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적극적인 공개 행정으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도 적극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함

주요골자

- . 공개의 정의에 인터넷과 시보 공개를 추가(안 제2조3호)
- .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사항을 명시(안 제6조)
- . 현행 제6조(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를 안 제6조의2로 조항을 개정
- . 행정정보 청구인이 100인 이상 다수이거나 공개 대상 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과 시보에 동시에 공개토록 하며, 정기공개는 1월과 7월에 하도록 명시(안 제8조제3항 신설)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천시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시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등을 말함.

제6조를 제6조의2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 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이천시 당해 년도 업무계획, 예산과 결산(전년도) 및 기금 운영계획
- 2. 이천시와 이천시 지방공기업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 계획
- 3. 이천시장의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4. 이천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 검사 결과 및 대기과 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측정결과
- 5. 이천시가 정례적으로 조사 또는 시행하는 부문별 시정의 중요 통계자료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건설 관련 통계, 강우량 및 강설량 통계)
- 6. 주요사업에 대한 상.하반기별 심사분석 결과.

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

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이천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3.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 지수 등 이천시가 전문 조사 연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본청, 읍.면.동, 산하기관, 이천시의 사무 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및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4. 재난 및 수방 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 현황
5.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현황
6.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 편람
8. 5천만원 이상의 중요 용역사업 집행 결과
9.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청구인이 100인 이상 다수이거나, 공개 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동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정례 공개는 매년 7월에, 하반기 정례 공개는 매년 1월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2(생략)</p> <p>3.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함.</p> <p>4.(생략)</p> <p>(신설)</p>	<p>제2조(정의)-----</p> <p>-----</p> <p>1-2(현행과 같음)</p> <p>3.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인터넷 또는 시보 게시와 열람 및 사본 교부 등을 말함.</p> <p>4.(현행과 같음)</p> <p>제6조(행정정보의 공표)①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이천시 당해 년도 업무계획, 예산과 결산(전년도) 및 기금운영계획</p> <p>2. 이천시와 이천시 지방공기업의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p> <p>3. 이천시장의 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p> <p>4. 이천시가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원수와 정수의 수질 검사 결과 및 대기과 소음 등</p>

현행	개정
	<p>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 및 측정결과</p> <p>5. 이천시가 정례적으로 조사 또는 시행하는 부문별 시정의 중요 통계자료 결과(교통속도 및 교통량, 쓰레기 발생량, 인구 및 세대통계, 도시계획 관련 통계, 건설 관련 통계, 강우량 및 강설량 통계)</p> <p>6. 주요사업에 대한 상.하반기별 심사분석 결과</p> <p>②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1. 이천시의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 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p> <p>2. 집행기관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p>

현행	개정
제6조 ①-③(생략)	3. 공공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각급 기관 및 부서의 반부패지수 등 이천시가 전문 조사 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한 본청, 읍·면·동, 산하기관, 이천시의 사무수탁기관 및 사회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및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 4. 재난 및 수방 대비 안전관리 분야 예산 집행 현황 5. 총 공사비 2억원 이상의 공사, 3천만원 이상의 물품구매 현황 6.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 결과 7. 민원처리 업무와 관련된 지침, 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8. 5천만원 이상의 중요용역사업 집행결과 9. 기타 집행기관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2 ①-③(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p>제8조(공개방법)①-②(생략)</p> <p>③(신설)</p>	<p>제8조(공개방법)①-②(현행과 같음)</p> <p>③청구인이 100인 이상 다수이거나, 공개 대상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 하는 행정 정보는 인터넷과 시보를 통하여 동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정례 공개는 매년 7월에, 하반기 정례 공개는 매년 1월에 공개하여야 한다.</p>